변리사 1차 시험

시험장 노트

민법 / 특허법 / 상표법

변리사스쿨

머리말

어느덧 제58회 변리사 1차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지는 만큼, 모든 수험생분들께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험기간 동안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쌓이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할 것입니다.

암기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암기하고.. 또 잊어버리고....

많이 힘드시죠?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을 것입니다.
합격자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수험생분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힘들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은 합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시어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Good Luck To You
변리사스쿨 배상.

목차

제01절 민법

제02절 특허법

제03절 상표법

변리사스쿨 동차 **종합반**

1. **선착순 20명**, 수강료 200만원 (3개월 분납가능)
2. 올해 2차시험(제58회)을 위한 실강 및 인강 **무제한 학습** (특허법, 상표법)
   - 수강기간 : 신청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내년 2차시험(제59회)을 위한 **모든 실강 무료제공**(기초GS, 실전GS는 제외)
4. 학원강사들의 **철저한 관리**
   - 공부 방법에 대한 개별 및 단체상담
   - 강사 상시대기 (자유로운 질의 응답 가능)
5. 자습실 **50% 할인** (변리사스쿨 종합반 전용, 고정석)
   - 관리형 자습실 : 50분 공부+10분 휴식, 식사시간 (점심 : 1시간, 저녁 : 1시간 30분)
   - 고품격 인테리어와 청결함 유지

[특허법]

2월	**기본강의, 기출문제**
3월	**사례강의, 기초GS**
4월	**기초GS, 실전GS**
5월	**실전GS**
6월	**실전GS**
3월부터	**주 4회 쓰기 1시간 (특허 2회, 상표 2회)**

[상표법]

1월	**기본강의, 판례심화**
2월	**기출문제, 기초GS**
3월	**사례강의,기초GS**
4월	**기초GS, 실전GS**
5월	**실전GS**
6월	**실전GS**
3월부터	**주 4회 쓰기 1시간 (특허 2회, 상표 2회)**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변리사스쿨(류호권)

제 01 절 민법

민법 최신판례(OX)

최신판례 중 다른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미 중요성이 입증된 판례들이라고 할 것이니 변리사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스쿨 민법 류호권

[문제1]

○ 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2021년 변호사>

※ 해설 ※

(○) :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8. 6. 28, 2016다221368).

[문제2]

❍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공인노무사>

❍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미치고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0년 감정평가사>

※ 해설 ※

(X), (○) :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민법 제391조는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주체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대표기관이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의사결정의 내용과 절차과정, 침해되는 권리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대표기관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9. 5. 30, 2017다53265).

[문제3]

○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변호사>

※ 해설 ※

(○) :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판 2020. 2. 6, 2019다223723).

[문제4]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021년 변호사>

※ 해설 ※

(○)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문제5]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2019년 법원행시>

※ 해설 ※

(X)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문제6]

○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용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후 그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019년 법무사>

※ 해설 ※

(X) :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

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 ①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문제7]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2020년 감정평가사>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2019년 법무사>
○ 甲 소유 토지 아래에 乙이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등을 매립하였는데, 그 쓰레기 등이 부패, 소멸되지 않고 현재도 토지 지하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甲이 그 쓰레기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쓰레기 매립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쓰레기의 수거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법원행시>

※ 해설 ※

(○), (○), (X)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판 2003. 3. 28, 2003다5917). ☞ 갑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토지를 굴착한 결과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매립되어 있었고 주변 토양은 검게 오염되어 있었으며, 이에 을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물제거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오니류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갑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을이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을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대판 2019. 7. 10, 2016다205540).

[문제8]

○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20년 감정평가사>

○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2020년 감정평가사>

○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2019년 법원행시>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2021년 변호사>

※ 해설 ※

(○), (X), (X), (○) :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19. 4. 3, 2018다296878).

[문제9]

❍ 甲은 2019. 6. 1. A로부터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로 이전하게 하였다. 2020. 7. 10. X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丁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乙이 그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21년 변호사>

※ 해설 ※

(○)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문제10]

❍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도급계약에서 건물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乙은 Y건물을 완공한 후 점유하면서 甲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Y건물을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였지만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Y건물을 D에게 임대한 후 위 임대차가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D가 Y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유치권은 소멸한다. <2021년 변호사>

※ 해설 ※

(×) :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문제11]

○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21년 변호사>

※ 해설 ※

(○) :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8. 1. 24, 2016다234043).

[문제12]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2021년 변호사>

※ 해설 ※

(○) : [1]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채권담보라고 하는 저당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저당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는 저당권과 분리해서 피담보채권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채권을 상실하여 양도인 앞으로 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과 구별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되지만,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였고 그 후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사 없이 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때 저당권은 **저당권자인 질권설정자를 위해 존재**하며,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되거나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질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정한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질권이 당연히 저당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공시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거나 압류한 사람,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등에게 예측할 수 없는 질권의 부담을 줄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 때에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법 제186조에서 정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법 제34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또한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당사자 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해서는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민법 제348조가 유추적용되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문제13]

❍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2021년 변호사>

※ 해설 ※

(○)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기대권은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호되어,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물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위와 같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문제14]

❍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되어 있고, 현지에서 당초 예정한 여행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2019년 법원행시>

※ 해설 ※

(○) :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되어 있고, 여행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치료행위의 필요성과 치료기간은 물론 해외의 의료 기술수준이나 의료제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장애 및 의료비용의 문제 등에 비추어 현지에서 당초 예정한 여행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문제15]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존재를 다툴 수 있다. <2020년 변호사>

※ 해설 ※

(○)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비교판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판 2010.11.11, 2010다43597).

[문제16]

❍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2020년 변호사, 2021년 변호사>

※ 해설 ※

(×)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8. 10. 25, 2018다210539).

[비교판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판 1993. 3. 26, 92다32876).

[문제17]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증을 포기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20년 변호사>

※ 해설 ※

(○) : ⅰ)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ⅱ)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문제18]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보증인의 서명’을 타인이 대신 쓰는 것이나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 법원행시>

❍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에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020년 변호사, 2021년 변호사>

※ 해설 ※

(X), (○)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대판 2019. 3. 14, 2018다282473).

[문제19]

❍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를 규정한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020년 변호사>

❍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면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021년 변호사>

※ 해설 ※

(×), (○) :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문제20]

❍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을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 된다. <2021년 변호사>

※ 해설 ※

(×) : 예약완결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서,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예약완결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19. 7. 25, 2019다227817).

[문제21]

❍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의 차임증액결정시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2018년 법무사>

※ 해설 ※

(×) :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8. 3. 15,2015다239508, 239515).

[문제22]

○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18년 법원행시>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18년 법원행시>

※ 해설 ※

(×), (○) :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판 2018. 1. 24, 2017다37324).

[문제23]

❍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 <2019년 법무사>

※ 해설 ※

(○) :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판 2019. 2. 21,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변리사스쿨 프리패스 패키지 **민법**

실강과 인강 중복하여 수강 가능 / 인강 무제한으로 반복 수강 가능

~~280만원~~ → **90만원**(약 70% 할인)

선착순 40명 **10%** 추가할인

수강기간 : 신청일부터 1년

[패키지에 포함된 과목]

3월	**기본강의**
6월	**중급강의**
9월	**객관식강의**
10월	**OX강의**
12월	**조문강의**
	최신판례강의
22년 1월	**진도별모의고사**
	변리사시험 기출 특강
6월부터	**모의고사 매월 실시**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직접운영하고 관리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담임강사: 류호권 교수

- 현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 현 법무경영평생교육원 민법전임
- 전 합격의 법학원 민법전임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초고등학교 졸업

변리사스쿨(조현중)

제 02 절 특허법

1. 2020년 주요 개정법률

컴퓨터 관련 발명 보호 강화	방법발명의 실시행위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추가(2iii)
	단 배타권 효력범위는 **악의**의 청약행위만으로 제한(94②)
손해배상청구 금액 상향조정(침해자의 양도수량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구법)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생산능력범위 x 단위당 이익액 (현행법)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생산능력범위 x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x 합리적 실시료) (128②)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이 공소 제기 가능(225②)
지정기탁기관 추가	부다페스트 조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지정한 기탁기관에 기탁하더라도 기탁 인정 가능(령2①)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대상 추가	마약류 의약품도 존속기간연장 가능(령7①)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정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령7-2①)
임시명세서 도입	청구범위제출유예 절차 밟으면서 임시명세서 제출 가능, 청구범위제출 기간까지 정식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출원취하간주(시규21⑤)
발명자 추가 절차 미비점 보완	99-2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 받은 경우 확인서류 첨부하지 않아도 발명자 정정 가능(시규28④)
PCT 보완명령 사유 추가	명세서·도면 미제출뿐 아니라, 명세서·도면 잘못 제출한 경우에도 보완명령하며, 명세서 다시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 접수일을 출원일로 인정(시규99-2)

2iii	“실시” 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94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128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

	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25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령2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국내기탁기관)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국제기탁기관)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지정기탁기관)** **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의 당사국이 아닐 것** **나. 해당 국가의 특허청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특허청장과 합의한 국가일 것**
령7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 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령7-2①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문서(오역정정서)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서면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류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증명서류 3)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시규2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임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임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규28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발명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시규99-2	① 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

	정하는 부분(정정 부분)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법 제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2.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접수일을 법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접수일이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되는 날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기간 정리

추후보완	2개월, 1년
정당권리자 출원	확정일부터 30일
공지예외주장	공지등이 된 날부터 12개월
청구범위 정식명세서 번역문 제출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제3자 심사청구취지 통지 받은날부터 3개월 (분할, 변경 +30일)
우선권 주장	기초출원일/선출원일부터 1년
우선권 주장 추가 보정	최우선일/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국내우주 선출원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취하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년(분할, 변경, 정당 +30일)
특허료	특허결정 받은 날부터 3개월, 추가납부기간 6개월, 보전기간 1개월, 권리회복신청 3개월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허가 받은 날부터 3개월+원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특허취소신청	등록공고 후 6개월
PCT 특례	공지예외(기준일 30일), 특허관리인(기준일 2개월), 보정(수+번+기), 변경(수+번), 심사청구(출원인 수+번, 제3자 국내서면만료 후), 214조 신청(통지된 날부터 2개월)
공시송달	게재한 날부터 2주 후 / 게재한 날의 다음날

3. 취하간주 사유 등

출원 취하간주	번역문 제출기간, 청구범위 제출기간, 심사청구기간, 분할출원, 국내우주 선출원
출원 포기간주	등록료 미납
특받권 포기간주	국방상 필요한 발명 외국출원금지, 비밀취급명령 위반시

4. 특허취소신청 대비

	특허취소신청	특허무효심판
제도 취지	특허권의 조기 안정화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절차	결정계 절차 (특허청과 특허권자)	당사자계 절차 (심판청구인과 특허권자)
청구인 적격	누구나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신청/청구 기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6개	설정등록 후 언제나(권리

간	월까지(권리 소멸 후에는 불가)	소멸 후에도 가능)
취하	청구항 별로 가능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취소이유 통지 후에는 불가능)	청구항 별로 가능 심결이 확정되기 전(답변서 제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필요)
취소/무효이유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원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모인출원, 공동출원위반, 권리향유위반, 조약위반 등
심리방식	서면심리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복수 사건의 심리	원칙 병합 심리	원칙 사건별 심리
결정/심결	취소결정(취소결정 전에 취소이유통지),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	무효심결, 기각심결 또는 각하심결
불복 소제기	취소결정, 신청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특허법원에 불복 기각결정, 합의체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불가	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특허법원에 불복 청구인 및 피청구인 모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

5. 국제조사 vs 국제예비심사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대상	모든 국제출원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
연락권	없음	있음
보정	국제조사보고서 수령 후 소정기간 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
단일성 결여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이용가능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2장 규정에 구속된 체약국 거주자 또는 국민이 그러한 체약국 또는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수리관청에 국제출원 한 경우만 적용
절차	1. 국제조사기관과 출원인간의 의견교환 - 원칙적 불허용 2. 보정 불허용 3.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 없음 4. 단일성 불인정 경우에 추가수수료 납부 5. 절차의 종료 - 보고서 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견해서 작성	1.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관리함 2. 보정 허용 3.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 있음 4. 단일성 불인정 경우에 추가수수료 납부 또는 청구범위 감축 5. 절차의 종료 - 보고서 작성

	PCT 19조 보정	PCT 34조 보정
주체	국제조사보고서 받은 출원인	국제예비심사 청구한 출원인
시기	국제조사보고서 송달일부터 2월 또는 우선일부터 16월 중 늦은 날까지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시까지
제출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횟수	1회	횟수 제한 없음
보정대상	청구범위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
보정범위	출원 시 국제출원의 범위	출원 시 국제출원의 범위

6. 국제공개

국제공개예외 - PCT21(5) 국제공개 전 국제출원 취하, PCT21(6) 공서양속에 반하는 부분, PCT64(3) 국제공개 필요 없다고 선언한 국가만 지정한 경우

7. 실용신안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대상	발명 (물건, 방법, 제조방법 카테고리 포함) (특허법제2조3호)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성 수반하는 협의의 물건 카테고리만 해당) (실용신안법제4조1항)
성립 요건	고도성 要 (특허법제2조1호→특허법제29조제2항에서 평가)	고도성 不要 (실용신안법제2조1호→실용신안법제4조제2항의 문구가 특허법제29조제2항과 상이)
진보성	쉽게 (특허법제29조2항)	극히 쉽게 (실용신안법제4조2항)

부등록사유	공서양속 문란, 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있는 발명 (특허법제32조)	공서양속 문란, 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있는 발명 +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 고안 (실용신안법제6조)
도면첨부要不	필요한 경우만 (특허법제42조2항)	필수 / 미제출시 반려 (실용신안법제8조2항 /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
우선심사대상의 상이	1.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3.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4.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 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특허법시행령제9조) 5. 타법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특허출(특허법시행규칙제39조)	1.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시행령제5조)
존속기간	설정등록이 있는날부터 특허출원일 후20년 (특허법제88조1항)	설정등록이 있는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 (실용신안법제22조1항)
존속기간연장제도	허가 등(특허법제89조) & 등록지연(특허법제92조의2)	등록지연(실용신안법제22조의2)
효력제한	1. 연구, 시험	1. 연구, 시험

	2. 국내통과 3. 특허출원시 물건 4. 약사법상 조제(특허법제96조)	2. 국내통과 3. 특허출원시 물건(실용신안법제24조)
간접침해	물건, 방법 모두 규정 有 (특허법제127조)	방법/물질에 관한 규정은 無 (실용신안법제29조)
생산방법추정규정	有(특허법제129조)	無
PCT(도면제출)	-	실용신안법 제36조(도면 제출) 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 ② 도면 미제출시 또는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미제출시 특허청장은 제출명령 可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제출시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 可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은 특허법 47조의 보정으로 취급. 단,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미적용.
침해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친고죄,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특허법 제225조 제2항)	수 없다(실용신안법 제45조 제2항)
몰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31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51조)

8. 최신판례 정리

(1)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특허요건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특허법 제97조).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일사부재리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 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

(5) 중복심판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이하 '전심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이하 '후심판'이라 한다),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6) 무권리자 출원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다.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38조 제1항). **여기서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진보성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

(8) 확인대상발명 특정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이용관계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 발명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리사스쿨 프리패스 패키지 **특허법**

실강과 인강 중복하여 수강 가능 / 인강 무제한으로 반복 수강 가능

1차 패키지 ~~150만원~~ → **100만원(약 35% 할인)**

2차 패키지 ~~150만원~~ → **100만원(약 35% 할인)**

1+2차 패키지 ~~300만원~~ → **150만원(50% 할인)**

(선착순 40명 **10%** 추가할인)

수강 기간 | 1차 - 신청일부터 1년
2차 - 신청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1차 패키지]

3월	**기본강의**
5월	**조문강의**
7월	**판례강의**
9월	**OX강의**
10월	**기출강의**
11월	**객관식강의**
12월	**심사기준강의**
	최종정리강의
6월부터	**모의고사 매월 실시**

[2차 패키지]

2월	**기본강의**
	기출문제
3월	**사례강의**
	기초GS
4월	**기초GS, 실전GS**
5월	**실전GS**
6월	**실전GS**
3월부터	**주 2회 쓰기 1시간**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직접운영하고 관리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담임강사 : 조현중 변리사

- 현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현 변리사스쿨 대표 / 현 인마이제이 대표
- 현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 현 유니셀랩, 콜마파마, 알리코제약 자문변리사
-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변리사스쿨(김영남)

제 03 절

상표법

1. 상표법상 상품

(1) 상표법상 상품이라 함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判). ★★★

(2)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편익의 제공은 상표법상 서비스를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判).

2. 표장(제2조 제1항 제2호)

상표법상 표장은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1) 광고

① 광고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리는 정도의 그림이나 글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判).

② 광고 등에 상표가 표시된 경우라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행위가 아니다(判). ★★★

(2)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判).

(3) 디자인과 관계

①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判).

②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判). ★★★

(4) 서적의 제호(判)

① 단행본 서적의 제호는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判).

② 다만, 서적의 성격, 제호의 사용 태양, 시리즈물 출시 여부, 광고 등에 따라,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判). ★

4. 사용의사(제3조 제1항 본문)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위반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사유,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5. 상표의 유사판단

(1) 요부관찰은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判).

(2)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분리관찰할 수 없다(判). ★★★

(3) 특정상품에 대한 거래사회에서 분리되지 않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이 없는 상품에 대한 거래사회에서도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다(判). ★

6. 제33조 제1항 제4호 ★★★

(1)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가능 하나,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判).

(2) 지리적 명칭이 현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서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야하는 것은 아니다(判).

7. 제33조 제2항

(1) 출원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의 장기간 사용은 식별력 취득의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判). ★

(2) 사식취한 부분을 그대로 포함하여 다른 부분과 결합으로 이미 취득한 식별력이 감쇄되지 않는 경우 전체로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한다(判). ★

(3) 출원상표와 동일성 있는 부분이 독립성을 유지한 채 지정상품에 흔히 쓰이는 문자부분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는 한, 식별력 취득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다(判). ★★★

(4) 출원인은 실제 사용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判). ★★★

(5)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요부가 될 수 있고,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관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判). ★

(6) 등록전이나 등록후에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사판단시 요부가 될 수 있다(判). ★

(7) 등록전이나 등록후에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判). ★

8. 제34조 제1항 제9호

캐릭터 등으로 주지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표로서 주지한지 여부는 캐릭터 자체가 저명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느냐 여부 등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判).

7. 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선사용표장 권리자는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고,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선사용상표를 등록·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신용주체로 인식되고, 선사용상표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判). ★★★

8.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수요자 기만

(1) (선사용상표가 저명하면,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判). ★★★

(2) 선사용상표가 저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특정인 상품 출처로서의 인식 이상의 경우),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비유사한 경우라도 인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가능하다(判).

(3)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정의 재료·용도 등에 한정된 경우, 한정이 없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判). ★★★

(4) 악의의 선사용상표도 본호의 선사용상표가 될 수 있다(判). ★★★

(5)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사용상표의 사용자가 선사용상표를 악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6)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判). ★★★

9. 제34조 제1항 제13호

(1)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비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과의 관계(동일·유사 또는 경제적 견련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2) 선사용상표가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의사가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본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10. 제34조 제1항 제14호

(1)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11. 제34조 제1항 제17호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타인X)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2. 제34조 제1항 제20호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3. 제40조 및 제41조

(1) 제40조 보정이 설정등록 후 요지변경으로 인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

(2) 제41조 보정이 설정등록 후 요지변경으로 인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정전의 출원에 관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

14.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과 손해배상청구권(109조, 110조)

(1)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손실보상청구권은 상대방이 악의라도 서면경고는 필수이다. ★

(2) 손해배상청구권행사시, 제110조 제3항의 침해자의 이익액은 한계이익(침해로 얻은 수익에서 변동비용을 공제한 금액, 고정비용 공제X)을 말한다. ★★

15. 권리소진

(1)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된다(判)

(2) 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6. 진정상품병행수입

진정상품을 소분하는 행위는 출처표시기능·품질보증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이다(判). ★★★

17. 권리남용

(1)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며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용을 용인한다면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判). ★★★

(2)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 등록결정이 된 후행 등록상표가 선행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고, 또한 후행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타인의 상표가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타인의 사용상표(후발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후행 등록상표가 무효(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로 될 수 있고, 그 결과 후발 선사용상표가 사실상 보호받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음.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일반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적·반사적인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

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후발 선사용상표의 사용이 선행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하게 된다거나 선행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判). ★★★

18. 존속기간갱신(제83조)

(1) 주체: 상표권자(공유인 경우 각자)가 할 수 있다. ★★★

(2) 시기: 만료 전 1년, 만료 후 6개월

(3) 주체나 시기 위반의 경우

① 거절결정X, 반려 ② 갱신등록무효심판 ③ 시기 反: 5년의 제척기간

(4) 지정상품이 2이상이 경우 ★★

①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② 신청 후 둘 이상의 신청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③ 지정상품 일부에만 신청할 수 있다.

(5) 갱신등록료의 분할납부

2회 분납가능, 다만, 2회차 등록료 미납시 갱신등록일부터 5년 지나면 상표권 소멸한다.

(6) 갱신등록신청의 효과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7) 갱신등록의 효과

원권리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8) 2회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에 1회 갱신등록에 무효심판 청구 가능하다(무효심결 확정시 갱신등록 전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음).

19. 상표권의 소멸

(1) 상표권자의 사망 ★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

(2) 청산법인 ★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까지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3) 상품분류전환등록 ★

① 전환등록이 없는 경우(신청X, 신청취하, 절차무효, 거절확정, 등록무효
전환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 소멸한다.

②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전환등록 되는 날에 소멸한다. 단, 전환등록되는 날이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인 경우 존속기간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20.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1) 제90조 제1항 제1호

①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로 그 기준을 완화하였다.

②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제90조 제3항 부정경쟁의 목적

① 상표권자의 신용(등록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 얻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判).

② 상표권자가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상표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동일사용불요) ★★

④ 등록상표의 구성 중 일부사용이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부정경쟁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등록상표 자체의 주지성이 획득되는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의 보호대상이 된다(判).

⑤ 등록상표의 신용획득 경위는 문제되지 않고, 지정상품에 주지성을 얻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判).

21. 국선대리인(제124조의 2) ★★

특허심판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2.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7조) ★★★

(1)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참가가 되지 않지만, 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상에 따라 보조참가 허용된다(判).

(2) 심사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므로, 심판 단계에서 심판청구인이 위 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55조, 제1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심사 및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사 및 심판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따른 강행규정이다.

23. 제119조 제1항 제1호

(1)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으로서,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출처혼동 우려가 더 커진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判). ★★

(2) 복수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출처혼동할 우려가 더 커진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判). ★★★

24. 제119조 제1항 제3호

(1) 불사용에 따른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 출처로서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사용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判).

(2) 등록상표가 다른 표지와 함께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判). ★

(3)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결합하여, 결합 전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외관·호칭·관념이 실사용상표에 형성될 수 있으므

로, 그 결합된 부분이 단순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하여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判). ★

(4) 일부청구 가능하다.

(5) 일부취하 및 일부심결 불가하다(判). ★★

(6) 취소심결 확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

(7) 본호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의사로 사용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출처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判).

(8)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이 말소된 경우

① 상표권 양수인은 여전히 상표권자로서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判). ★

② 사해행위 취소판결확정 전 상표권 양수인·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취소 면할 수 있다(判). ★

25.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소진, 진정상품 병행수입, 사용권, 권리남용은 심리대상이 아니다.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 등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 제한사유만 주장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判). ★★★

26. 심결취소소송

(1) 판단시점

① 소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심결의 위법성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判).

(2) 심리범위 ★

① 당사자계 심판: 무제한설(判). ② 결정계 심판: 제한설(判).

27. 마드리드

(1) 국제등록일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되고, 2월을 경과하여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된다.

(2) 존속기간 갱신 ★★

국제등록명의인은 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고, 갱신수수료를 납부하여 국제상표등록부를 갱신함으로써 지정국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갱신이 가능하고, 국제등록명의인은 존속기간 갱신신청시 지정국 중 일부에 대한 갱신을 포기할 수 있다.

(3) 승계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일반승계 특정승계를 불문하고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라도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승계는 일반승계든 특별승계를 불문하고,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라도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

(4)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정은 지정상품(상표X)에 한하여 보정이 가능하다. ★

28. 입체상표 ★★★

상품에 기호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어 사용된 경우라는 사실만으로 입체적 형상 자체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할 수 없고, 상품의 형상이 기호 등과 별도로 출처표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判).

29. 증명표장 ★★★

(1) 증명표장권자는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다.

(2) 상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 받을 수 없다.

(3)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0. 침해죄 ★★★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변리사스쿨 프리패스 패키지 **상표법**

실강과 인강 중복하여 수강 가능 / 인강 무제한으로 반복 수강 가능

1차 패키지 ~~180만원~~ → **100만원(약 45% 할인)**
2차 패키지 ~~150만원~~ → **100만원(약 35% 할인)**
1+2차 패키지 ~~300만원~~ → **150만원(50% 할인)**
(선착순 40명 **10%** 추가할인)

수강 기간 | 1차 - 신청일부터 1년
2차 - 신청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1차 패키지]

4월	기본강의+진도별 기출
6월	핵심이론정+진도별기출
7월	중급
8월	객관식
9월	조문특강
10월	1차만을 위한 판례
	OX특강
11월	최종정리
12월	진도별 모의고사
	취약파트 특강
1월	핵심체크 및 객관식50제
6월부터	모의고사 매월 실시

[2차 패키지]

1월	기본강의
	판례심화
	기초GS
2월	기출문제, 기초GS
3월	사례강의,기초GS
	실전GS
4월	실전GS
5월	실전GS
6월	실전GS
3월부터	주 2회 쓰기 1시간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직접운영하고 관리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담임강사 : 김영남 변리사

- 현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 현 변리사스쿨 상표법 강사
-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상표법 강사
- 특허청 심결판례연구 과정 교육 담당
- 전 남방FC 엔지니어
- 전 무일특허법률사무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밀화학과 졸업

변리사스쿨 프리패스 패키지 **디자인보호법**

실강과 인강 중복하여 수강 가능 / 인강 무제한으로 반복 수강 가능

~~60만원~~ → **30만원**(50% 할인)

선착순 40명 **10%** 추가할인

수강기간 : 신청일부터 1년

[패키지에 포함된 과목]

6월	**기본강의+ 진도별 기출**
8월	**핵심이론정리**
9월	**객관식강의**
11월	**최종정리강의**
6월부터	**모의고사 매월 실시**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직접운영하고 관리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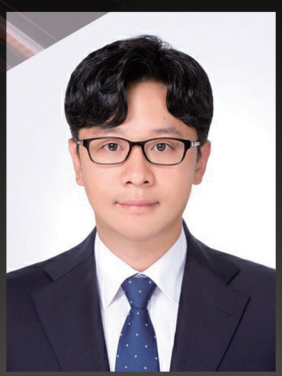

담임강사 : 김영남 변리사

- 현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 현 변리사스쿨 상표법 강사
-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상표법 강사
- 특허청 심결판례연구 과정 교육 담당
- 전 남방FC 엔지니어
- 전 무일특허법률사무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밀화학과 졸업